

|       |            |
|-------|------------|
| 의안번호  | 2217133    |
| 의 퇴 인 | 조인철의원      |
| 회 답 일 | 2026.3.23. |
| 추계번호  | 26D1129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23의2 신설 | 2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침해사고 대응, 원인분석 및 조사, 발신번호 변작 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
| 2  |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20의2 신설       | 20의2. 제5조제23호의2에 규정된 자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 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sup>1)</sup>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및제5호의 범죄 <sup>2)</sup>                                                        |    |
| 3  | 안 제7조의4(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3급 이상 직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6호 및 제7호의 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    |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제4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제73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제48조의4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8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제8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23호의2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20의2 신설          |                                                    |
| 3  | 안 제7조의4(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                                                    |

### 2. 상세 사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무 부여(안 제5조 및 제6조)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 기관 포함)직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지원 및 출장소 포함) 직원 중 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사이버 위협 탐지 분석 등의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할 경우, 수사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예산의 상당부분이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되므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는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의 수와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 기준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사업”에 63억 6,700만원을 편성함. 구체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10억원),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44억 7,300만원),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 운영(2억 1,200만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6억 8,2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보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임지원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지원 | 02-6788-4664 | Img1@nabo.go.kr |